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 발 의 자 : 김광수 의원 외 10명
- 의안번호 : 제2369호
- 발의일자 : 2018년 2월 9일
- 회부일자 : 2018년 2월 12일

### 2. 제 안 이 유

- 공공이 이용하는 공원을 점용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점용료와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공원 이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통해 부과하고 있으나, 관람권을 발매하는 유료 행사에 대한 명확한 이용료 징수 규정이 없음.
- 이에 사익을 추구하는 유료행사의 경우 이용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3. 주 요 내 용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별표 2] 이용료 규정에 유료행사 관련 이용료 규정을 신설함.
- 이용료는 입장권 발매 총액의 10~15%를 부과하도록 하며, 공간을 점용한 점사용비용은 별도로 지급하도록 함

###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 선 희)

### 가. 개정안의 개요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도시공원의 입장료(제40조)와 점용료(제41조)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점용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동 개정안은 공원에서 입장권(티켓)을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행사도 일반 공원이용과 동일하게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현실적인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개정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1) 공원시설 이용절차와 이용료

- 3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원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기별로 각 사업소에서 접수를 받고 장소사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별된 행사에 한해 이용을 허가하고 있음.
- 공원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별표 2]의 규정에 의해 해당 행사와 시설, 그리고 사용하는 공간에 따라 이용료 부과기준에 의해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음.
- 이용료는 점용면적 1㎡당 10~20원의 금액을 부과하며, 이 경우

단체나 기관에서는 공원 이용 목적에 부합하게 이용하여야 함.

## 2) 유료행사 개최 현황

- 최근 3년간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산하 시관리공원에서의 유료행사는 58건으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2건, 중부공원녹지사업소 3건,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53건 개최되었음.
- 행사의 대부분은 참가비를 내고 진행하는 마라톤 대회로, 주최측에서는 기업 홍보용 기념품을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형태로 진행하며, 행사로 인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2017년 1월 서울숲에서 개최한 재즈 페스티벌의 경우 5천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티켓가격이 4만8천원 이었으므로 티켓 판매액은 2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공원 점용료는 297만원에 불과하여 티켓을 발행하는 유료행사의 경우 적절한 점용료와 이용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3) 유사사례 검토

- 공공의 공간 이용시 소관 조례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한강에서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입장권 발매행사는 입장권 발매 총액의 10%를 이용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입장권 수입 이외에 1㎡당 30~40원의 점용료를 별도로 징수하고 있음.
- 또한 시립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공행사, 문화예술행사는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8, 체육경기는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 일반행사는 100분의 15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한강이나 체육시설의 경우와 같이 공원에서도 유료 입장권 발매행사에 대해 입장권 발매 총액의 10~15%를 이용료로 징수하고 점용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것은 서울시의 시설 및 공간의 이용에 있어 형평성에 맞는 조치라 할 수 있음.
- 다만 공원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기별로 각 사업소에서 접수를 받아 '장소사용심의위원회'를 거쳐 행사를 허가하는 만큼 이미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행사에 대해서 신규 이용료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바, 조례 적용 시기를 하반기인 2018년 7월 1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4) 기타

- 공원의 일시적 장소사용을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중복되는 날짜의 행사를 선별하거나, 공공목적의 행사에 한하여 선별 승인하는 절차를 운영중 임.
- 그러나 각 사업소 별로 일시적 장소사용 기본원칙이 상이하고, 특히 개인 또는 특정 기업 및 단체의 홍보 캠페인 행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허가자의 의견에 따라 행사의 가부가 엇갈리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어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정하고,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 공원인 문화비축기지는 일시적 공원 이용을 서부공원녹지사업소와 별도로 접수를 받고,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관리가 이원화 되고 있으며, 동부공원녹지사업

소 산하 서울숲은 민간위탁 관리 중으로 일시적 장소사용 허가를  
함에 있어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바 푸른도시국 차원에서 총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첨부 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별표 2] 공원시설 이용료(제15조제1항 관련) <개정 2017.5.18.>

공원 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체육경기	기타행사		
공 통	잔디광장	1㎡당, 2시간	20~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 공휴일은 이용료 30% 가산</li> <li>야간에는 이용료 30% 가산(토, 공휴일은 제외)</li> <li>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 할인</li> <li>풋살경기장은 청소년 이용시 30% 할인, 어린이는 무료. (이 경우 청소년 및 어린이의 팀 구성원 비율이 50% 이상 일 때 적용)</li> </ul>	
	일반운동장(광장)		5~10	10~20		
	축구장	잔디	1회 2시간	120,000~156,000		300,000~390,000
				55,000~82,500		110,000~143,000
	풋살 경기장	10인용	1회 2시간	25,000~32,500		
		6인용		15,000~19,500		
	테니스장	실외	1면당, 2시간당	8,000~16,000		
		실내	1면당, 2시간당	25,000~37,500		
	파크골프장		어 른 1회당	4,000~6,000		
			청소년 1회당	3,000~4,000		
			어린이 1회당	2,000~3,000		
	파크골프장 물품대여료		클럽(1회당, 개당)	1,000~2,000		
	아영장		아영장소 1회당	10,000~30,000		
			전기 1회당	3,000~5,000		
	아영장 물품대여료		아영텐트 1회당	5,000~20,000		
			1인용매트 1회당	1,000~1,500		
	사진·영상 촬영녹화		최초 1시간	13,000~19,500		
			초과시간당	6,500~13,000		
공원이용 프로그램참가비		1회당 (1일당)	1,000~20,000			
강의실 대여료		100㎡당, 1시간당	20,000~30,000			
야외무대		2시간당	100,000~150,000			
청소년 체험의 숲		어 른 1회당	8,000~12,000			
		청소년 1회당	5,000~8,000			
		어린이 1회당	3,000~5,000			
국공장		1일(3시간)	2,000~4,000			
		1개월	20,000~40,000			
남 산 대 공 원	차량통행료	승합자동차 (16인승이상)	3,000 ~ 6,000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15인승이하)	2,000 ~ 4,000			
서울 대 공 원	서울대공원 캠핑장	어 른 1회당	2,000 ~ 4,000			
		청소년 1회당	1,500 ~ 3,000			
		어린이 1회당	1,000 ~ 2,000			

## 첨부 2) 유사사례 검토

###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① 전용사용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과 동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권은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관람권에는 관람권의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전용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관람권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제9조의 입장료 수입 총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 수입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체육경기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
2. 공공행사, 문화예술행사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8
3. 일반행사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15

③~④ 생략

###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별표 2]

8. 기 타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영화촬영	1회당 - 주 간 (08:00~18:00) - 야 간 (18:00~익일 08:00)	100,000~160,000원 210,000~330,000원
녹 화	1시간당 초과시간당	23,000~33,000원 11,000~16,000원
거북선관람	어린이( 6~12세) · 1회 청소년(13~18세) · 1회 성 인(19세이상) · 1회	300~400원 700~1,000원 1,000~1,500원
잔디발행사	100명 이상 독점 모임행사시 2시간 기준 1㎡당	30~40원
도 로 점 용 행 사	5km당(1일 이내) 행사집결지에 대하여는 잔디발행사는 별도로 징수함	45,000~64,000원
입 장 권 발매행사	입장권을 발매하는 상업성 행사 (콘서트·전시회 및 기타공연)	입장권 발매 총액의 10%

### 첨부 3) 최근3년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유료행사 개최 : 58건

- 세부내역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2건, 중부공원녹지사업소 3건,  
서부공원녹지사업소 53건(어린대공원, 서울대공원은 없음)

####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장 소 (공원명)	일 시	행사명	토지 점·사용료	행사 수입	
				총수입	행사 입장료 가격
서울숲공원	'17.9.21.~ 25.(5일)	할리스 페스티벌	8,800천원 ※ 도시공원 조례 이용료 규정 적용	0천원 (예상)	○ 티켓가격 할리스페스티벌 - 10,000명(초대권)
		윈더우먼 페스티벌		163,200 천원 (예상)	- 장당 48,000원 × 3400명
	'17.10.7.~ 8.(2일)	재즈 페스티벌	2,963천원 ※ 도시공원 조례 이용료 규정 적용	240,000 천원 (예상)	○ 티켓가격 - 장당 48,000원 × 5,000명

####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남산공원	'16.09.11(1 일)	2016 아식스클런 마라톤	300천원 ※ 도시공원 조례 이용료 규정 적용	30,000천원 (예상)	○ 티켓가격(인터넷접수) - 장당 50,000원 × 600명
	17.09.10(1 일)	2017 아식스클런 마라톤	300천원 ※ 도시공원 조례 이용료 규정 적용	30,000천원 (예상)	○ 티켓가격(인터넷접수) - 장당 50,000원 × 600명
용산공원	17.09.15~0 9,17 (3일)	이니스프리 플레이그린 페스티벌	5,557천원 ※ 도시공원 조례 이용료 규정 적용	30,000천원 (예상)	○ 티켓가격(인터넷접수) - 장당 20,000원 × 1,500명

####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월드컵 공원	'16.11.18 (09~14)	2016 반려동물사랑 걷기대회	981천원 ※ 도시공원 조례 이용료·점용료 규정	30,000천원 (예상)	○참가비(1,000명) - 1인 30,000원
	'17.2.19 (08~14)	2017 챌린지레이스	1,584천원 ※ 도시공원 조례 이용료·점용료 규정	65,000천원 (예상)	○참가비(2,000명) - 1인 40,000원 (기념품 포함) - 1인 25,000원 (기념품 없음)
	'17.9.9 (17~21) '17.9.10 (09~13)	2017 마이런서울	2,758천원 ※ 도시공원 조례 이용료·점용료 규정	1,000,000천 원 (예상)	○참가비(20,000명) - 1인 50,000원
여의도공원	'16.9.4 (08~14)	2016 런 온 서울 마라톤	3,077천원 ※ 도시공원 조례 이용료·점용료 규정	120,000 천원 (예상)	○참가비(12,000명) - 5K-10,000원 - 단체 10,000원 - (기념품 없음)

※ 행사수입은 티켓가격에 행사 참여인원을 고려하여 산출한 추정치로(최대 수익액) 실제 수입은 적을 수 있음